

# 한-EU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2010년 10월 15일

ICBL 인천관세법인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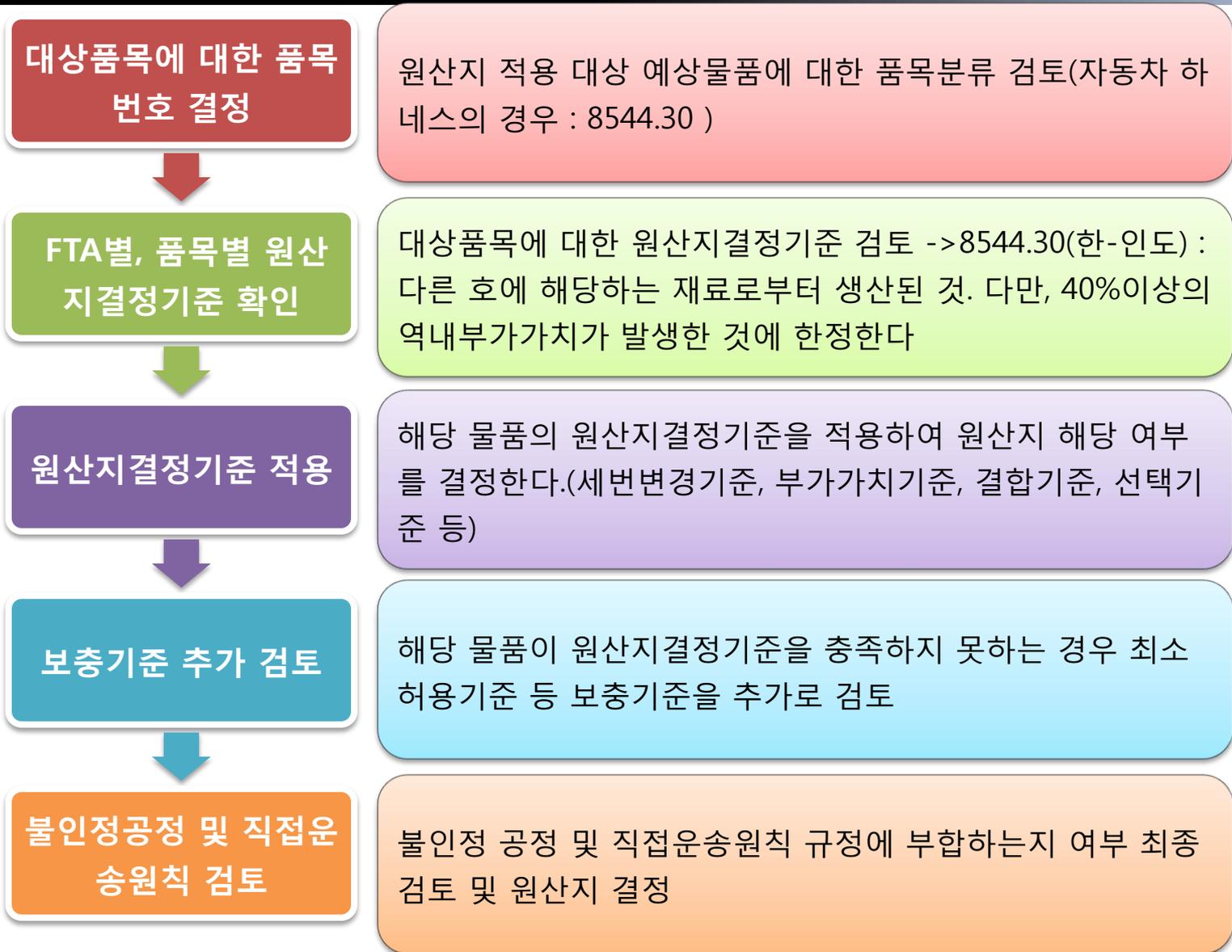
1.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절차

2. 한-EU 원산지 결정기준

3. 원산지기준 적용 사례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1.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절차



## 2.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 1.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 ●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 물품의 원산지를 해당 국가로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마다 품목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
- 

## ●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 criterion)은 당해 물품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 

- 실질적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세번변경기준

### ● 세번변경기준이란?

- 비원산지재료에서 제품으로의 변경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을 세번 (HS CODE)변경으로 판정하는 방식(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
  - 결국, 국제적 통일 상품분류방식인 류, 호, 소호체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방식
- 

### ● 세번변경기준의 구분

- HS 2단위(류) 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 HS 4단위(호) 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6단위(소호) 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 Heading)

## 2.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예시

- 합금분말(HS 7205.21)을 수입하여 철강제 와셔(washer)(HS 7318.22)를 생산한 경우
- 

- 세번변경기준의 구분

- 2단위(류) 변경기준(CC) : 72류 → 73류, 변경 됨 ⇒ 충족
- 4단위(호) 변경기준(CTH) : 7205호 → 7318호, 변경됨 ⇒ 충족
- 6단위(소호) 변경기준(CTSH) : 7205.21 → 7318.22, 변경됨 ⇒ 충족



7205.21



7318.22

## 2. 부가가치기준

### ● 부가가치기준이란?

- 부가가치기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국내)에서 발생해야만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MC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구분	한-칠레	한-싱	한-아세안	한-EFTA 한- EU	한-인도	한-미
부가가치 공식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MC 방식	공제법	공제/집적/ 순원가법
부가가치 수준	공제법45% 집적법30%	45~55%	공제법40%	30%~60% 이하	35%	55%/35%/ 35%
제품가격 기준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EXW)	조정가격 (FOB)	조정가치 (FOB)

## 2. 부가가치기준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MC : import Contents Method)

- 비원산지재료비에서 상품가격을 나눈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한-EFTA, 한-EU FTA에서 사용

$$\text{비원산지 재료비율} = \frac{\text{비원산지 재료비}}{\text{공장도 가격}} \times 100\%$$

- 공장도 가격: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일반적으로 EXW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는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

- 비원산지 재료비: 일반적으로 CIF 가격, 알 수 없는 경우 생산국 내 최초 확인 가격

## 2. 주요공정기준(가공공정기준)

### ● 기공공정기준

- 품목별로 주요한 생산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 주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음

### ● 한-EU FTA 가공공정기준

- 공통기준 : 섬유류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외에 가공공정기준에도 적용되는 최소허용치(8~30%)규정
- 개별기준 : 신발(64류)의 경우 역외산 갑피와 안창이 부착된 겨우 불인정

### ● 한-EU FTA 섬유류 원산 결정기준(Fabric-forward 원칙)



## 2. 보충적 원산지기준

### ● 역내가공원칙

-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협정별 일부 예외 인정)

### ●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 ● 누적기준

- 원산지 결정시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재료누적 O 공정누적 X)

## 2. 보충적 원산지기준

### ● 최소기준

- 소량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10%미만)

### ● 간접재료

- 상품의 생산, 검사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
- 원산지결정시 간접재료비는 고려하지 않으나 한-칠레FTA에서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원산지재료로 간주

###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나,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결정시 제외하고 결정
- 한-EU의 경우 부속품등도 세변변경 여부 및 부가가치 기준 적용 계산

## 2.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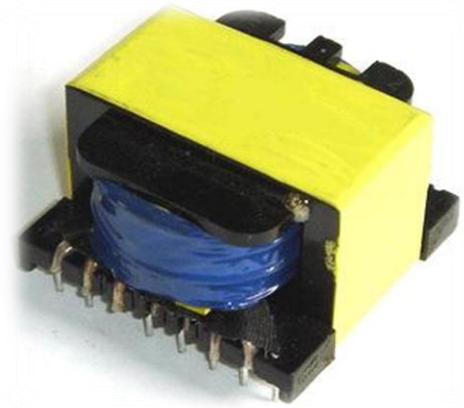
구분	한-칠레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미
발효일자	2004. 4. 1	2007. 6. 1	2010. 1. 1	2011. 07. 01 (예상)	.
원산지결정 기준	- 품목별기준 -BU30%이상 -BD45%이상	- 품목별기준 -RVC40%이상 -CTH	-품목별기준 -RVC35%이상+ CTSH	- 품목별기준	-품목별기준 -(BU,BD,NC)
일반적인 품목 별 원산지결정 기준	CTH	CTH	CC+RVC CTH+RVC CTSH+RVC	CTH MC	CTH CTSH BU, BD, NC
제품 기준가격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EXW)	조정가격 (FOB)
원산지증명 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3. 한-EU 원산지기준 적용 사례

### 3.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사례(세번변경기준)

- 사례 : 각종 부품을 이용하여 Transformer(HS 8504.31)를 생산한 경우

품명	원산지	품목 번호
Core	한국	8504.90
Bobbin	중국	3923.40
Wire	일본	8544.11
Tape	중국	3919.10
기타의 부품	한국	



850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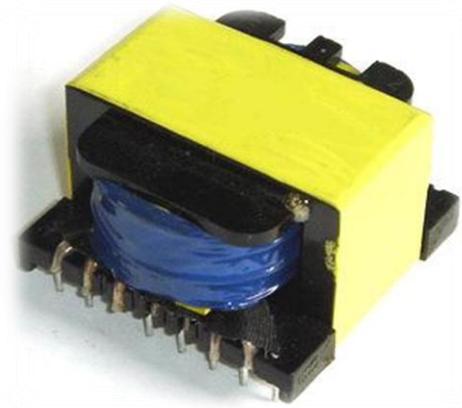
- 세번변경기준 판단

- 세번변경기준을 판단할 경우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만 적용
- 따라서 Bobbin, Wire, Tape에 대해서만 세번변경여부를 판단하면 됨

### 3.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사례(세번변경기준)

- 사례 : 각종 부품을 이용하여 Transformer(HS 8504.31)를 생산한 경우

품명	원산지	품목 번호
Core	한국	8504.90
Bobbin	중국	3923.40
Wire	일본	8544.11
Tape	중국	3919.10
기타의 부품	한국	



850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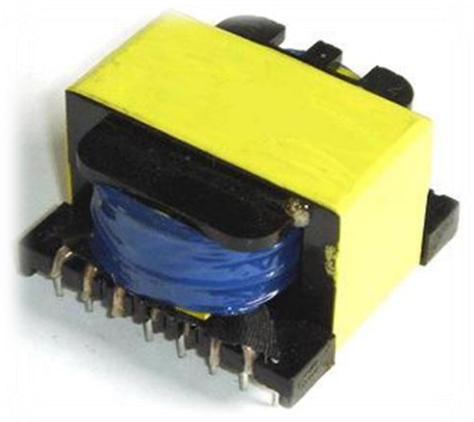
-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 2단위 변경기준(CC) : Wire 미변경( 85류 → 85류) ⇒ 미충족
- 4단위 변경기준(CTH) : 모든 재료가 호 변경 ⇒ 충족
- 6단위 변경기준(CTSH) : 모든 재료가 소호 변경 ⇒ 충족

### 3.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사례(부가가치기준)

● 사례 : 각종 부품을 이용하여 Transformer(HS 8504.31)를 생산한 경우

품명	원산지	금액
Core	한국	4,000
Bobbin	중국	2,000
Wire	일본	2,000
Tape	중국	1,000
기타의 부품	한국	1,000
계		10,000



8504.31

● 부가가치기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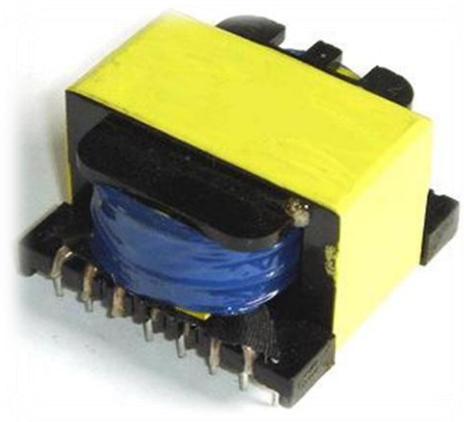
- 한-EU는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MC법을 채택
- MC법

$$RV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Ex-Works)}} \times 100$$

### 3.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사례(부가가치기준)

● 사례 : 각종 부품을 이용하여 Transformer(HS 8504.31)를 생산한 경우

품명	원산지	금액
Core	한국	4,000
Bobbin	중국	2,000
Wire	일본	2,000
Tape	중국	1,000
기타의 부품	한국	1,000
계		10,000



8504.31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상품가격과 비원산지재료비를 계산하여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결정
- MC법

$$RVC = \frac{(2,000 + 2,000 + 1,000)}{10,000} \times 100 = 50\% \text{ (결정기준인 45\%초과함으로 미충족)}$$

##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란?

-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3년
인증기관	관세청(인증심사센터)	본부세관
인증기준	법규준수도 및 증명능력 (복잡)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시 혜택

구분	혜택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일부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
한-EU FTA	6,000유로 이상 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송품장 신고방식)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서명 생략

- 인증범위에서만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가능
- 원산지결정기준은 인증업체 자율관리
- 서류보관, 원산지 검증절차는 규정에 따라 이행

##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 원산지 인증수출자 요건

- 인증수출자 요건은 크게 원산지기준충족,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류보관, 법규준수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증명능력보유	해당품목(HS6단위)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외부전문가 지정가능, 관세사 포함)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외부전문가 지정가능, 관세사 포함)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 처벌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이 품목별 인증보다 까다로움

##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세관	절차	기업
업체별: 관세청 인증심사센터 품목별: 본부세관	<b>1. 인증신청 (UNI-PASS)</b>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서류 구비
신청서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시 현지확인)	<b>2. 인증요건심사</b>	
필요시 보정 요구	<b>3. 보정요구(5~10일)</b>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신청내역(보정내역포함)확인 후 인증부여(유효기간 3년)	<b>4. 인증부여(20일 이내)</b>	
변경내역 확인 후 승인	<b>5. 인증변경신고 및 수리</b>	인증사항 변경시 신고
연장신청접수 후 요건확인 후 3년간 연장	<b>6. 연장신청 및 인증</b>	인증만료 30일전 연장신청
운영보고서 확인 및 필요시 인증 요건 확인	<b>7. 사후관리</b>	
위반요건 발생시 시정명령	<b>8. 시정명령</b>	30일 이상
청문결과 인증요건 위반시 인증 취소	<b>9. 인증취소 및 청문</b>	청문시 소명자료 제출

## 4. 품목별 인증수출자

### ● 품목별 인증 수출자 자격요건(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구 분	세 부 요 건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p>1.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을 수출하는 자 ( 해당 협정에 한하여 적용, ex)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            : HS 6단위는 포괄적 개념으로 대표모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HS 6단위의 개별품목이 아니라, HS 6단위 전체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특정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함)</p>
원산지 관련 업무 관리 능력	<p>2. 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3항 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 관세사 포함)를 지정, 운영하는 자</p>
법규 준수도	<p>3. 최근 2년간 FTA특례법 제13조 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5년간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1항 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p>

## 4. 품목별 인증수출자

###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시 제출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의 신청서(전산으로 신청)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의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 원산지 인증 수출자 협약서(별지 제 30호의 서식)
- \* 별지 제30호 서식은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더라도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인증 받은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협약서임

## 4. 품목별 인증수출자

### ● 품목별 인증심사 기준 요약

기준	확인사항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관세사 포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
법규준수도	최근 2년간 법 제13조 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5년간 영 제13조 1항 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 (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4. 품목별 인증수출자

### ●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주요내용	확인사항	확인방법
<p>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 품목 (3~5개)을 선정하여 확인</p>	<p><b>생산공정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에 해당 하는지 여부</li> <li>-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 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소명서</li> <li>- 원산지확인서</li> <li>-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li> <li>- 회사소개자료</li> <li>-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li> </ul>
	<p><b>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출(생산)품목 3~5개 선정</li> <li>-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li> <li>- 원산지확인서 및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li> <li>- 원재료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li> <li>- 수출품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li> <li>-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li> <li>- 원산지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li> </ul>	

## 4. 품목별 인증수출자

### ● [Specialist]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

주요내용	확인사항	확인방법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외부의 원산지 전문가 포함)	<p>원산지관리전담자가 고시 제2-4-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었는지 여부 (갖추었을 경우 이하 심사 생략)</p>	해당 자격증
	<p>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의 점수 총합이 <b>20점 이상</b>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관리담당자용 업무매뉴얼 : 10점</li> <li>-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10점)</li> <li>- 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 10점</li> <li>-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최대 20점)</li> </ul> <p>*민간협회는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등 FTA업무관련성 등을 참고하여 인증담당자가 판단 **사내교육의 경우 과목, 강사 등을 참고하여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증 여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소지자 : 5점</li> <li>-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컨설팅 실적(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건당 5점</li> <li>-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 1년 이내 2점, 2년 이내 3점, 3년 이상 5점</li> </ul>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

## 4. 품목별 인증수출자

###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 (기관발급 포함) -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 FTA특례고시 별지 제5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전산 파일 제출 가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 [법규준수] 처벌이력 등 확인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신청자 법규준수	최근 2년간 FTA특례법 제13조2항의 조사 거부사실 확인	본부세관 심사총 괄과에 공문 확인
	최근 5년간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1항2호의 서류보관 의무 위반 확인	처벌 이력 전산 조회

##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상담처

-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상담팀 연락처

- 전화번호 : 031-600-0760, 031-600-0764, 031-697-2553

- 이메일 : [fta@customs.go.kr](mailto:fta@customs.go.kr)

---

- 인천본부세관 FTA집행센터

- 전화번호 : 032-452-3224

- 팩 스 : 032-891-9136

---

- ICBL 인천관세법인 컨설팅사업부

- 전화번호 : 070-8686-8090(이남규관세사), 070-8686-8010(문경진관세사)

- 이메일 : [icblfta@gmail.com](mailto:icblfta@gmail.com)

# 감사합니다



무역에 관한 종합서비스

**ICBL**

인천관세법인

(주)인천로지스틱스

(주)인천보세창고



**인천상공회의소**